

산학협력단법인 정관

제정 2004.03.01

3차 개정 2025.08.2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5.8.26.>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안에 둔다.

제4조(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그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대학 부설 연구기관, 학교기업 및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(단장) ① 산 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조직 및 소관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

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조직 및 행정사무) ① 산학협력단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하부조직에는 교수,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에게 대학소속 교직원에 대한 파견 또는 겸직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직된 자는 대학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, 연구원, 직원 및 조교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,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, 출연금, 기부금 및 보조금

제11조(수입)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입금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이자수입
6.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, 외부인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
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출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
2.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산학협력회계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 그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13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4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 칙

제15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정관의 변경) 총장은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-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-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.
-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 2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 3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
- ② 제1항의 사항은 대전시내에서 발간하는 주요일간지에 공고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권리 및 의무의 승계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지적재산권의 이전)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

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